[규정서식 제7-1호]

[ ] [예금 / 신탁] 거래 신고서			처리기간
신청인	상호 및 대표자 성명	(인)	
	주 소 (소 재 지)	(전화번호)	
	업 종 (직 업)		
신청내역	예금(신탁)개설인	(성명) (전화번호) (주소)	
	예치(처분)금 액		
	예치(처분)후잔액		
	예치(처분)사유		
	지 급 상 대 방	(성명) (주소)	
	송 금 은 행		

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은행총재 귀하
(외국환은행의 장)

신 고 번 호	
신 고 금 액	
유 효 기 간	

신고기관 : 한국은행총재 (인)
(외국환은행의 장)

〈첨부서류〉 1. 거래 또는 행위 증빙서류
2.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〈신설〉

※ 유의사항 1. 해외에서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2.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잔액현황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① 법인 :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
② 법인이외의 자 : 연간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